

1.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3.10.24. 제정·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 다. 물순환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신청서에 대한 서식을 규정(안 제4조)
- 라.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 제출서류 양식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검토기관을 규정(안 제5조)
- 마.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시설 품질인증 시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범위, 품질인증기관 지정·해제, 신청서류, 수수료,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 표시 방법 등을 규정(안 제6~12조)
-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체

화 및 신청서·지정서 양식을 규정한 내용(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 물순환 촉진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3. 물순환 촉진구역의 행정구역, 총인구, 면적, 물관리 조직 등 일반현황자료
4. 물순환 촉진구역의 대상유역 명칭·면적·유역도, 유역 내 물관리 지표, 하천수계, 수문·기상, 대상유역 내 물관리 시설 등 유역 물순환 현황자료
5. 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환경부장관이 선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술적·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물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6조(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품질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
기술인증원

2.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지
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품질인증업무 처리규정

3. 품질인증업무 수행계획서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
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신청 제품·설비의 물순환 성능 관련 자료
 2. 신청 제품·설비의 품질 관련 자료
 3. 신청 제품·설비의 설계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4.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료부터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① 품질인증은 현장심사, 품질시험 및 인증심의 순서로 진행하되, 해당절차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현장심사: 제조,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2. 품질시험: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에 따른 제품·설비별 품질시험
 3. 인증심의: 품질인증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품질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설비의 생산이 사실상 중

단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설비를 제조하여 유통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제품·설비는 1년 이내에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품질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인증정보망 활용) ①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제품·설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정보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제품·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증정보망에 게재해야 한다.

1. 품질인증번호

2. 사업장명

3. 제품·설비명

4. 인증기간

5. 용도

6.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결과

7.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② 영 제2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품질인증 제품·설비의 범위(제6조 관련)

1. “물순환 품질인증” 범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순환 시설”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과 설비

2. “물순환 품질인증” 구분

구분	정의
물순환 제품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완제품으로서 단일 기자재, 기기 등
물순환 설비	성격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제품이 융·복합 되어 사용되는 기술, 시스템 등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조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해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품질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인력

가.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환경,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분야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환경,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분야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가목 1)의 기술인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가목 2)의 기술인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상근 심사전문인력 5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 2) 한국인정기구에서 KOLAS 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운영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품질관리·품질경영분야 연구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4) 표준화 관련 기관에서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품질경영 관련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인증업무 처리규정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상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품질인증 심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인증심사원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품질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연장·변경·취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마. 품질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바. 품질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에 관한 사항

사.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아.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사항

물순환 품질인증 수수료(제8조제2항 관련)

1. 품질인증 신청수수료

- 가. 인증 신청수수료는 인건비, 심의회의 개최비용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건당 2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인증의 변경 신청시 수수료는 건당 125만원으로 한다.
- 나. 인증 신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다. 신규인증(제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포함한다)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수수료는 같다.

2. 현장심사 수수료

가. 인증심사원 출장비

- 1) 금액: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 여비
-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나. 심사수당

- 1) 금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
-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추가로 적용한다.
- 3) 심사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 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추가적으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0조 관련)

1. 도안 모형

< ‘가’ 형 >



< ‘나’ 형 >



2. 도안 요령

가. 크기: 도안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 \times H$ 비율로 유지하
되,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안을 적정한 크기로 조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도안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우 C
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
을 말한다. 다만,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검은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표시 방법

가. ‘가’형은 제6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제10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제
품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나’형은 제6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제10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설
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같은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서로 다른 내용의 도안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변경허가) 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구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건축면적	m ²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연면적	m ²
	[]공작물의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 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m ²			
		입목벌채	수종		수량	
	[]토석의 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의 분할·합병	종전면적	m ²	분할면적	m ²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 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간)		
[]나무의 벌채 및 식재	수종		수량		면적	m ²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종류		수량		면적	m ²
행위의 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행위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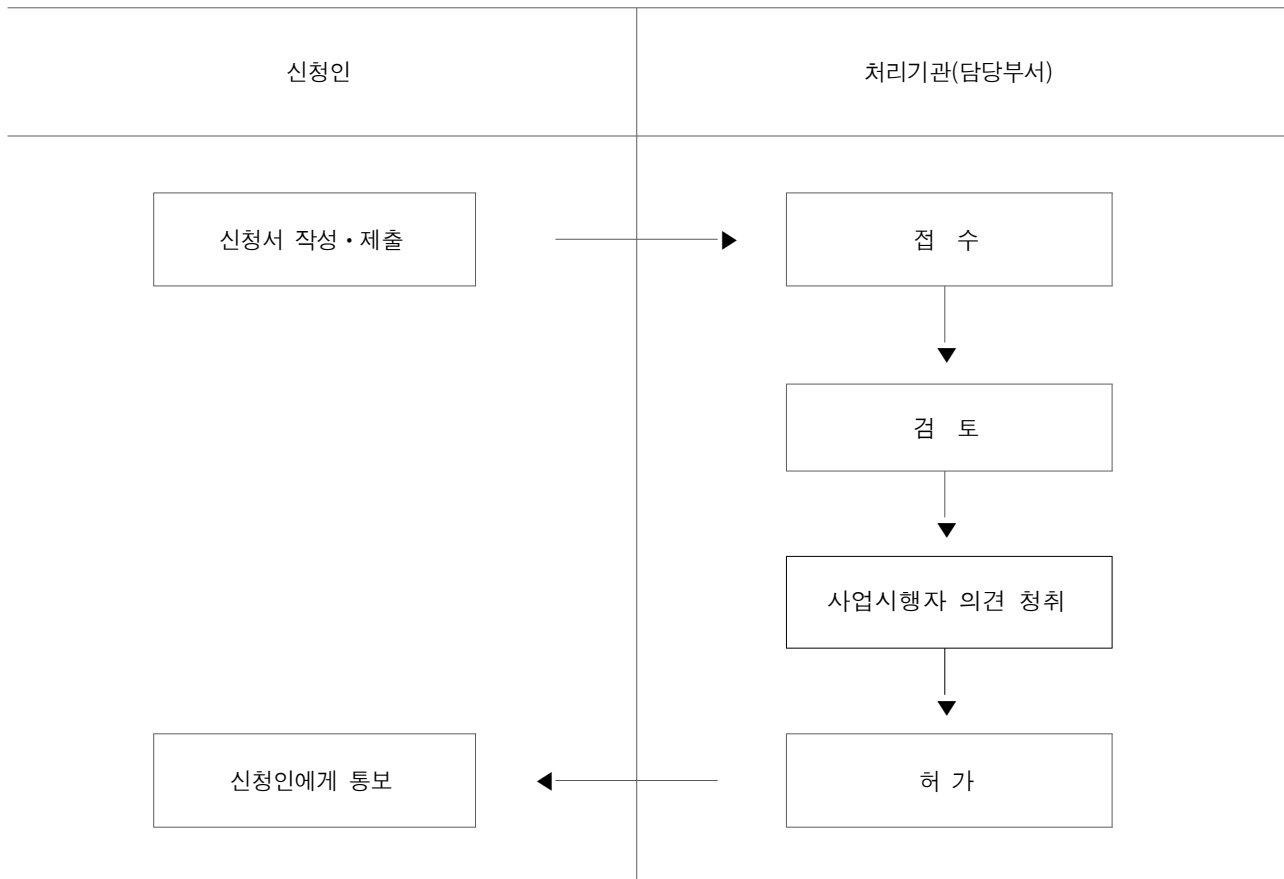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허가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식.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위허가가 의제되어 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식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식 4. 「건축법」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 변경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사업 시행자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m²						
	사업목적							
	시행방법							
	사업시행기간 ~							
	토지이용 현황(m²)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 계획(m²)	용도별						
		면적						
	물순환촉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						
개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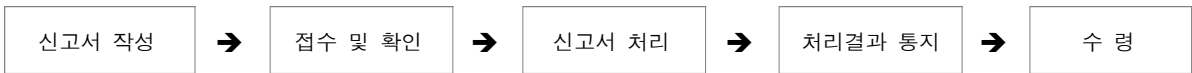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날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1부 2. 위치도 1식 3. 관계서류 및 도면 1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물순환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 내용	인증대상 품목				
	조직				
	인력				
	시설				
	장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품질인증업무 처리규정 3. 품질인증업무 수행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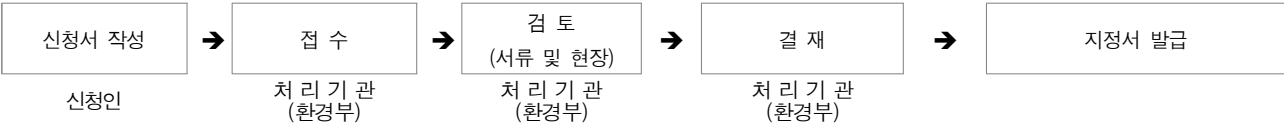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제 호

물순환품질인증기관 지정서

-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시설·장비·인력 현황

시설	
장비	
인력	

- 인증대상 품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물순환 품질인증 [] 신청서
[] 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물순환 제품·설비 현황	물순환 제품·설비의 종류		물순환 제품·설비의 사용용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순환 시설 해당 여부: []해당, []해당 없음		
	물순환 제품·설비의 인정 유효기간 (해당하는 경우):		
품질인증 연장신청	종전 품질인증번호	종전 인증유효기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품질인증
[] 품질인증 연장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 제품·설비의 물순환 성능 관련 자료 1식 2. 신청 제품·설비의 품질 관련 자료 1식 3. 신청 제품·설비의 설계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1식	수수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토 (서류 및 현장)	→ 인증여부 결정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인증기관의 장

제 호

물순환 품질인증서

1.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인증기간:

5. 품질인증 대상 제품·설비:

6. 용도 및 목적: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순환 제품·설비에 관하여 품질인증 합니다.

년 월 일

품질인증기관의 장

직인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팩스번호
	기관 소재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교육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부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지정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제 호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4. 기관 소재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146